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장 총 칙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8조에</u>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————— <u>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</u> —————</p>	<p>제1조(목적) 1.————— <u>에 의거</u> <u>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</u></p> <p>2. <u>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,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</u></p>
<p><u>제2조(정의)</u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“주민자치센터”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통칭한다.</p> <p>2.“단체”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·자생단체, 취미·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————— <u>각종 민간단체, 직능·자생 단체</u>—————</p>	<p>제2조(정의) 1.————— <u>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</u>————— <u>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중심적기능을</u> <u>총칭한다</u></p> <p>2.“<u>민간단체</u>”란————— <u>각종직능 취미 동호회 등</u> <u>주민이 조직한 자생단체를 말한다</u></p>

현 행	기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기능)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의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지역문화 행사, 취미교실,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</p> <p>2. 평생교육, 교양강좌,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</p> <p>(신 설)</p> <p>3. 회의장, 알뜰매장,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</p> <p>4. 내집앞 청소하기, 불우이웃돕기,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</p> <p>5.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,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</p>	<p>제5조(기능)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지역문제 토론, 마을환경기구 기,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</p> <p>2. 지역문화행사, 전시회,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</p> <p>3. 건강증진, 마을문고,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	<p>제5조(기능) ①.</p> <p>1. ----- 자율봉사활동-----</p> <p>2. 지역문화예술행사등 예술적여가선용기능-----</p> <p>3. 건강증진, 마을문고,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주민복지기능</p>
제7조(운영)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(이하 “자치센터의 운영”이라 한다)은 동장이 한다.	제7조(운영) ①(현행과 같음)	제7조(운영) ①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장하고 프로그램운영(이하 “자치센터의 운영”이라 한다)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 결정한다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7조(구성등) ①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.	<p>제17조(구성등)①----- ----- ---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.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 1. -----주민자치위원회 ---</p>	<p>제17조(구성등)①----- ----- ---25인 이내로서 65세이하로 구성하되,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 1. -----위원회---</p>
	<p>별표 사용료등 기준(제10조 관련)</p> <p>1회 1시간</p> <p>기타</p>	<p>별표 사용료등 기준(제10조②③ 관련)</p> <p>1회 1시간당</p> <p>기타요금 사용료감면</p>